

# **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**

2017. 5. 16.
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.4.27.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7.5.2.

다. 상정일자 : 제21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17.5.16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제안설명자 : 주택과장 이홍주

### 가. 제안이유

기존 「주택법」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2016. 8. 12. 「공동주택관리법령」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위임 근거 조문을 「주택법」에서 「공동주택관리법」으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법령위임 근거 조문을 “「주택법」”에서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”으로 변경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13조)

### 3. 검토보고 (김용범 전문위원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,
- 안 제1조 중 “「주택법」 제59조제6항” 을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제6항으로 개정함.
- 안 제2조제1항제1호는 “「주택법 시행령」 제82조” 을 “「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」” 제96조로 개정하고, 같은 항 제2호는 “「주택법」” 을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”으로 개정함.
- 안 제4조제1항 중 “「주택법」 제59조제4항” 을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제4항”으로 개정함.
- 안 제13조제1항 중 “「주택법」 제45조의4제2항” 을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7조제2항”으로 개정하고, 그 밖의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